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정,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 등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성평등가족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16.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안

제1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제4항제2호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2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및 직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발 신 ○○지방공소청○○지청장 직인

○○지방공소청○○지청장 직인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수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 신 ○○지방공소청 ○○지청장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성 평 등 가 족 부

제 호

년 월 일

수 신 ○○○○공소청

제 목 공개명령청구 요청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명령청구를 요청합니다.

공개청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여권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주 소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		
죄 명			사건번호	
열람결정(또는 열람명령)기관	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일자	
	○○○○법원		선고일자	
열람기간				
공개되는 신상정보				

붙임: 1. 판결문 사본 1부

2. 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문 사본(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람대상자로 결정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3. 공개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요청 이유서 1부

○○○○공소청

년 월 일

수 신: ○○○○법원

제 목: 공개명령청구

위와 같이 공개명령청구의 요청이 있는 바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공개명령을 청구합니다.

검사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성 평 등 가 족 부

제 호

년 월 일

수 신 ○○○○공소청

제 목 고지명령청구 요청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지명령청구를 요청합니다.

고지명령 청구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여권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주 소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		
죄 명			사건번호	
공개명령기관	○○○○법원		선고일자	
공개기간				
공개되는 신상정보				

붙임: 1. 판결문 사본 1부.

2. 고지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요청 이유서 1부.

○○○○공소청

년 월 일

수 신: ○○○○법원

제 목: 고지명령청구

위와 같이 고지명령청구의 요청이 있는 바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고지명령을 청구합니다.

검사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6(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 ③ (생략)	제2조의6(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④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수사기관</u> 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법 제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 기록: 10년	2. <u>검사 및 수사기관</u>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통지)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 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u>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u> <u>제2호의2서식</u> 에 따라 통지한다.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의 통지) <u>사법경찰관</u> ----- ----- ----- ---- <u>별지 제2호서식</u> ----- -----.